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156-10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1 편

영아수당 개요 / 1

- I. 영아수당 제도 개요 3
 -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3
 - 2. 영아수당 제도 4
 - 3. 지급대상 4
 - (1) 연령요건 4
 -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5
 - 4. 지급방식 6
 - (1) 영아수당(현금) 6
 - (2) 영아수당(보육료) 6
 - (3)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6
- II. 영아수당 업무흐름도 7
- III. 아동의 보호자 8
 - 1. 개요 8
 - 2. 보호자 요건(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9
 -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9
 -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9
 - 3. 보호자 판단방법 9
 -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9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10
 - (3) 미혼부 자녀인 경우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11

| | |
|------------------------------|----|
|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15 |
| (1) 개요 | 15 |
| (2) 보호자 변경 사유 | 15 |
| (3) 보호자 변경 절차 | 16 |
| (4) 구비 서류 | 17 |
| (5)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 18 |

제 2 편

영아수당 신청 / 19

| | |
|-----------------------|----|
| I. 신청권자 | 21 |
| 1. 아동의 보호자 | 21 |
| 2. 보호자의 대리인 | 21 |
| II. 신청의 종류 | 22 |
| 1. 신규 신청 | 22 |
| 2. 변경 신청 | 22 |
| III. 신청방법 및 기간 | 26 |
| 1. 신청방법 | 26 |
| (1) 방문신청 | 26 |
| (2) 온라인신청 | 26 |
|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27 |
| 2. 신청기간 | 27 |
| IV. 구비서류 | 28 |
| 1. 필수제출 서류 | 28 |
| 2. 추가제출서류(필요 시) | 29 |

| | |
|--|-----------|
| V.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30 |
| 1. 신청상담 | 30 |
| (1) 신청자격 등 확인 | 30 |
| (2) 가구구성 안내 | 31 |
| (3) 영아수당(현금) 지급계좌 안내 | 31 |
| 2. 신청서 작성 | 31 |
| 3. 고지사항 | 32 |
|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 32 |
| (2) 신고 의무 | 32 |
| (3) 환수 및 처벌규정 | 32 |
|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 33 |
| V-1. 전산관리번호 · 복수국적자 · 거주불명자 | 33 |
|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33 |
| 2. 복수국적자 | 35 |
| 3. 거주불명자 | 35 |
| VI. 현장조사(필요 시) | 36 |
| VII. 영아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37 |
| 1. 제도 개요 | 37 |
| 2. 세부 내용 | 37 |
| 3. 처리 절차 | 37 |
| 4. 사후 관리 | 38 |
| 5. 주의사항 | 39 |
| VIII. 신청 등록 및 접수 | 39 |
| 1. 신청 등록 | 39 |
| 2. 접수 처리 | 39 |
| (1) 신규신청 | 39 |
| (2) 변경신청 | 40 |

제 3 편

조사 및 보장결정 / 41

| | |
|------------------------|----|
| I. 조사 개요 | 43 |
| 1. 일반원칙 | 43 |
| (1) 개요 | 43 |
| (2) 조사원칙 | 43 |
| 2. 조사의 종류 | 43 |
| (1) 신청조사 | 43 |
| (2) 확인조사 | 45 |
| 3. 자료제출 요구 | 46 |
| II. 가구구성 | 47 |
| 1. 개요 | 47 |
| 2. 가구원의 범위 | 47 |
| 3. 가구구성 절차 | 48 |
| III.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50 |
| 1. 지급 결정 | 50 |
| 2. 결정 통지 | 50 |
| (1) 통지 주체 및 방법 | 50 |
| (2) 통지 내용 | 51 |
| (3) 통지 기한 | 51 |
| (4) 유의 사항 | 51 |

제 **4** 편

영아수당 지급 / 53

- I. 영아수당(현금) 지급방식 55**
 - 1. 지급개요 55
 - (1) 지급방식 55
 - (2) 지급개시 55
 - (3) 지급시기 56
 - 2. 영아수당(현금) 지급계좌 56
 - (1) 기본원칙 56
 - (2)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 대리 수령 56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58
 - (4) 현장지급 58
 - 3. 영아수당(현금) 지급 절차 59
 - (1) 개요 59
 - (2) 단계별 처리 내용 59
 - 4. 연령도래자 자격전환 61
- II. 미지급 영아수당(현금) 62**
 - 1. 개요 62
 - 2. 청구권자 63
 - 3. 청구절차 63
 - 4. 지급청구 방식 63
 - 5. 결정 통지 및 지급 64
- III. 수급권 보호 64**
 - 1. 원칙 64

| | |
|--------------------|----|
| 2. 압류방지 전용통장 | 64 |
| (1) 개요 | 64 |
| (2) 발급 절차 | 65 |
| (3) 급여계좌 등록 | 65 |
| (4) 유의 사항 | 65 |

제 5 편

사회복지시설 입소아동 / 67

| | |
|------------------------------|----|
| 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69 |
| II.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70 |
| 1. 영아수당(현금) 신청 | 70 |
| 2. 영아수당(현금) 급여 관리 | 71 |
| III.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71 |
| 1. 영아수당(현금) 신청 | 71 |
| 2. 영아수당(현금) 지급 | 72 |
|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 72 |
| IV.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73 |
| 1. 영아수당(현금) 신청 | 73 |
| 2. 영아수당(현금) 업무처리방법 | 74 |
|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 74 |
|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 75 |
|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 75 |
| V. 가정위탁아동 | 76 |

제 **6** 편

수급자관리 / 77

| | |
|---------------------------|-----------|
| I. 수급아동 사후관리 | 79 |
| 1. 사후관리 개요 | 79 |
| (1) 대상 | 79 |
| (2) 확인 방법 | 79 |
| 2.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 80 |
| (1) 신고사항 | 80 |
| (2) 신고 및 처리방법 | 80 |
|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 81 |
|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 81 |
| (2) 영아수당 지급정지 | 82 |
| II. 급여액 환수 | 84 |
| 1. 개요 | 84 |
|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85 |
| (1) 환수 대상 | 85 |
| (2) 환수 대상자 결정 | 85 |
| (3) 환수금액 산정 | 85 |
| 3. 환수금 징수 | 86 |
| (1) 징수 방법 | 86 |
| (2) 상계 처리 | 86 |
| (3) 환수금 징수 절차 | 87 |
| (4) 소멸 시효 | 87 |
| 4. 결손 처분 | 88 |
| (1) 결손 처분 가능 대상 | 88 |
| (2) 결손 처분 방법 | 89 |

| | |
|---------------------|----|
| Ⅲ. 부당수급자 관리 | 90 |
| 1. 과태료부과 | 90 |
| (1) 위반행위 확인 | 90 |
| (2) 과태료 부과 결정 | 90 |
| 2. 벌칙 | 92 |

제 7 편

이의신청 등 / 93

| | |
|--------------------------------|----|
| I. 이의신청 | 95 |
| 1. 개요 | 95 |
| 2. 절차 | 96 |
|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 96 |
|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 97 |
| II. 위원회의 기능 및 종류 | 97 |
| 1. 위원회 기능 | 97 |
| 2. 유사위원회 활용 | 98 |

제 8 편

영아수당(현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 101

| | |
|------------------------|-----|
| I. 국가 및 지방비 부담비율 | 101 |
| II. 부담금 집행 및 정산 | 102 |

제 9 편 서식 / 103

| | |
|--|-----|
|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105 |
|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109 |
| [서식 3-1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12 |
| [서식 3-2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13 |
| [서식 3-3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14 |
| [서식 4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15 |
| [서식 5호] 보장비용부담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116 |
| [서식 6호] 이의신청서 | 117 |
| [서식 7호] 현장 조사서 | 118 |
| [서식 8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119 |
| [서식 9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 120 |
| [서식 10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 122 |
| [서식 11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 124 |
| [서식 12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125 |
| [서식 13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127 |
| [서식 14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129 |
| [서식 15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130 |
| [서식 16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132 |
| [서식 17호] 영아수당(현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 133 |
| [서식 18호] 영아수당(현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 134 |
| [서식 19호]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 | 135 |
| [서식 20호] 영아수당(현금) 소금지원 신청서 | 136 |

영아수당 개요

- Ⅰ 영아수당 제도 개요
- Ⅱ 영아수당 업무흐름도
- Ⅲ 아동의 보호자

제 1 편 | 영아수당 개요

I 영아수당 제도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영아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 (제10조)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영아수당을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 (부칙 제4조) (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부칙 제6조)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영아수당(현금) 단가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규정

2. 영아수당 제도

- (영아수당의 정의)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영아수당의 종류)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바우처)
 - 영아수당(바우처) :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 (지급형태)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체관계와 유사
- ('22년도 지원금액) 3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예산사업 분류) 영아수당 지원(현금), 영유아보육료지원(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제도도입 전후비교〉

(단위 : 만원)

| 2021년 | | | | | 2022년 이후 | | | | |
|--------|-------|------------|-----|------------|----------|-------|------------------|--------------------------------|------------|
| 연령 | | 0세 | 1세 | 2~7세 | 연령 | | 0세 | 1세 | 2~7세 |
| 아동수당 | | 월10 | | | 아동수당 | | 월10 | | |
| 보 육 | 시설미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보 육 | 시설미이용 | 현금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 월20 | 월15 | 월10 | | | 영 아 수 당 | 월30 ⇒ 월50 ('22년) ('25년) | 월10 |
| | 시설이용 | 보육료(바우처)지원 | | | | 시설이용 | 바우처 (보육료) 월50 | | 보육료(바우처)지원 |
| | | 월50 | 월50 | 월28 ~36 | | | 월28 ~ 월36 | | |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3. 지급대상

(1) 연령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현금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 복수국적자,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불명자의 경우 “제 5편 - VI. 전산관리번호·복수국적자·거주불명자” 참고

용어 정의

■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수급권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기관: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이하 특별자치도는 ‘시·군·구’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
-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사용)

4. 지급방식

(1) 영아수당(현금)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영아수당(보육료)

- 지급 금액 :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3)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II 영아수당 업무흐름도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1. 신청·접수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상담 및 안내 - 지급 요건, 가구 구성, 보호자 등 확인 - 신청서 및 복수국적자 등 확인서류 제출 요청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
| 2. 가구구성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가구범위 확정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
| 3. 사실관계 확인 (읍면동,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후 접수 처리 |
| 4. 보장결정·지급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 3-1호)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서면원칙, 요청시 SMS, 전자우편 등) • 자격서비스 급여액 지급 - 지자체에서 직접지급(매월 25일) |
| 5. 변동·사후관리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조사) 영아수당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 광역·기초 자치단체별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변동사항은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변동관리) 영아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 - 자격변경, 인적사항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 확인 방법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된 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가구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사항, 보장기간 도래 등) - 본인 신고 시,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 변경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 (사후관리) 부정·중복 차단 및 모니터링, 보장비용 환수 등 |
| 6. 급여액 환수 (시군구 사업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여, 환수 검토 후 절차 이행 •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 납부 고지 → 납부 독촉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영아수당(현금)만) - 위반행위 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통지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 |
| 7. 이의신청처리 (시군구 사업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격 인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시군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기관 :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

| 연령별 | 만0~1세 | | | 만2세 이후 | |
|-----------|---|---------|--|--|---|
| 상황별 | 출생신고 시 |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만2세 연령도래 시 |
| 신청 가능 서비스 | 1. ('22년~ 출생아) 영아수당 현금 2. (~'21년 출생아) 가정양육수당 | ⇒ 자격 전환 | 영아수당(보육료)신청 영아수당(현금)중지 - 바우처로 지원 * 전산상 보육료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신청 영아수당(현금) 중지 - 바우처로 지원 * 전산상 종일제아이돌봄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영아수당 자격일괄 중지 →영아수당 지원당시 세부 서비스로 자동 자격 전환 *영아수당(현금)→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전산상 영아수당(현금)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
| 주의 사항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필요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 * 영아수당 현금·바우처간 중복금지 * 영아수당 세부 서비스 변경시 신청필요 (현금 ↔ 바우처) |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금지 * 자격 변경 시 신청필요 | |
| 신청 방법 | 방문: 전국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 | | 방문: 전국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 |

III 아동의 보호자

1. 개요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법 제2조)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영아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 (☞ “제 2편 - 1. 신청권자” 참고),
대리 수령 (☞ “제 4편 - 1. 영아수당(현금) 지급 방식” 참고)

2. 보호자 요건(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3. 보호자 판단방법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 ① 친권자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는 경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자가 됨
 - 부모와 아동의 동거 여부,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모 이혼 등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 각각에게 따로 있는 경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양육권자)를 보호자로 추정
 -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 다른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거나, ▲ 해당 부모를 친권자로 선정·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② 후견인의 경우 아동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단순 재산 관리 등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자를 확인하여 보호자로 추정

 **예시 1**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외)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예시 2**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예시 3** 부모가 있는 아동이 A시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됨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 ① 친권자·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거나, 아동과 관계가 해체된 경우 등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추정
 - 우선 공적자료(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보호·양육자 판단 (필요 시, 친권자·후견인 등을 통한 확인 병행)
- ②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여러 명으로 보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외)조부모 → 3촌 이내 친척 → 기타 동거인” 순서로 보호자 추정
 -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에서 제외
- ③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은 시설장이나 위탁 부모가 보호자가 됨
- ④ 입양대상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되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 예시 1**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상담·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예시 2**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모·고모·삼촌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
 ⇒ 상담·현장 확인으로도 특정한 보호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모를 우선 보호자로 추정 (조모가 중대 질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 예시 3**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다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하는 경우
 ⇒ 입양기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이며,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되면 해당 위탁모를 보호자로 변경 조치

(3) 미혼부 자녀인 경우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미혼부가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유전자검사결과와 ②‘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현장조사)을 거쳐 미혼부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

 -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영아수당을 지급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아동의 실제 양육여부가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사업의 ‘무호적자(자료구분(4))’ 기준에 따라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 지급 시 출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완료되거나 타지역 전입·전출이 발생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기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자격 상실처리 등 조치 필요(중복지급 방지)

 - * (예) ① 전입자의 경우 전출지(前 거주지역)에서 아동수당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중복 수급여부 확인·조치 ②타지역 전출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등 조치
- ** 전입·전출 시 전입·전출 지역 담당자 간 유선 확인 등 필요

중요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조회 가능
-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 ④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i)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
 - ii)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 ii-1)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
 -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 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
 - *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중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에 대한 확인방법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필요시 구비서류 등록 및 상담내용 작성(ex.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 | 확인 방법 |
|----------------------------------|---|
| 사망, 실종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자료 등 공적자료 확인 |
| 이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등 공적자료 확인 |
| 가족관계 해체 (이혼 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해체가 입증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시설 입소,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아동학대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사유 확인 입증할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지 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ii) 현장조사 실시 및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제출 요청 |
| 가출, 실종, 행방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실종 신고증, 가출인 수배부 등 제출 요청 |
|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 확인 |
| 중증질환, 성년후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 질환, 의식 불명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제출 요청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 장기 해외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출입국 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단기 출국,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신청 유도 ii) 장기 출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서식 8호), 신청서(서식 1호)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 대리신청 유도 |
| 시설아동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보호 등은 공적자료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기관 내 보호 등의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 확인 불필요 **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시군구 입양담당자 통해 확인 또는 「입양대상 아동 위탁확인서」(입양기관 발급) 제출 요청 |
| 미혼부 ¹⁾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검사결과,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증명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아동양육여부 확인(현장점검) 필요(미혼부 자녀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1)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부'로서 보호자가 되므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등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 순위 | |
|---|--|
| 가구 유형 | 보호자 우선 순위 |
| ① 부모 - 자녀 동거 가구 (한부모 가구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
| ②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나, 일정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 ③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 ④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공적자료나 현장조사 등으로 행방불명·가출·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
| ⑤ 사망, 실종 선고,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
| ⑥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제외)에 입소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
| ⑦ 아동이 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에 입소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이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 하되, 보호자가 확정(시설 전원, 가정 위탁 등)될 때까지 지급 보류 (보호자 확정 시 보류된 급여 함께 지급) |
| ⑧ 가정위탁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부모 |
| ⑨ 입양대상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관에서 보호 시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됨 •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1) 개요

- 시군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법령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 및 지급 계좌 변경 등 가능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보호자와 일치시켜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원
 - * 아동명의 통장으로 입금시 변경된 보호자의 아동명의 통장 소유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지급

(2) 보호자 변경 사유

- ①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를 범하여 임시조치(제19조), 보호처분(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이 있는 경우
- ②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제2조 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제16조의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제2조)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
-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한 경우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2호)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제3호)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4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6호)

- ④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제15조 제5항)를 한 경우
- ⑤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이외의 자가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변경
- ⑥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를 범하여 임시조치(제29조), 보호처분(제40조),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등이 있는 경우
- ⑦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⑧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사망 의심자,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 포함)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보호자 변경 절차

- ①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
 - 공적자료 확인(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신고(아동위원, 이웃 주민 등), 사례관리(맞춤형 사례관리팀, 드림스타트 등) 등을 통해 법령상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영아수당 담당자(읍면동 및 시군구)가 인지한 경우 직접 보호자 변경 조치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변경될 다른 보호자를 확인한 후, 해당 보호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및 보호자 변경절차 진행
 - ※ 시군구(아동 업무, 통합조사·관리팀 등)에서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확인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변경될 다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구비서류 제출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거나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아동의 다른 보호자는 법령상 보호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에 「영아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3호) 제출 가능
-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담당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공적자료·구비서류 등 확인,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한 후, 보호자 및 지급계좌 변경 등 조치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 : 부 → 모 또는 모 → 부),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보호자 및 급여지급계좌 변경·등록

(4) 구비 서류

- 「영아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서식 13호)
-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변경될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자가 공적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
-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자료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경우 :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서 사본
- 아동 단독시설 입소(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보호 형태가 변경된 경우 : 행복e음 변동 알림
- 교정시설 입소 등의 경우 : 교정시설 입소자자료
 - 여성수용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직접 양육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시설 내에서 실제 양육 중인지 여부를 확인
- 공적자료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 ※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보호자 자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가능

(5)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 기준 시점
 -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 : 확인일
 -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신청일
- 급여 지급 기준 (아동학대·가정폭력에 의한 보호자 변경은 별도 처리)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 : 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6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 : 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변경사유 발생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으로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주의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기준

- 담당자가 인지하거나 다른 보호자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기존 보호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영아수당 지급
 - 새로운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등), 보호자가 확정될 때까지 급여지급 보류 가능
- 영아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지급

영아수당 신청

- ① 신청권자
- ② 신청의 종류
- ③ 신청방법 및 기간
- ④ 구비서류
- ⑤ 신청상담 및 신청서 작성
 - ⑤ - 1. 전산관리번호 · 복수국적자 · 거주불명자
- ⑥ 현장조사(필요 시)
- ⑦ 영아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⑧ 신청등록 및 접수

제 2 편 | 영아수당 신청

I 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제 1편 - III. 아동의 보호자” 참고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영아수당을 신청할 경우(p.11 참고),
 -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필요 시 양육비 지급내역 또는 아동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보육료 납입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
 -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이 경우 군복무증명서, 재소증명서, 가정해체사유서 또는 아동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보육료 납입내역 등을 증빙하여 실질적 보호자임을 조부모나 친인척이 증빙)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 사망, 실종 신고¹⁾
 - 국적 상실²⁾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 실종신고 취소, 국적 회복의 경우 수급권 회복 (단, 재신청 필요)
- 아동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아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자 : ▲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II 신청의 종류

1. 신규 신청

- 출생 후 영아수당(현금) 또는 영아수당(보육료)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시에는 영아수당(현금)만 신청가능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2. 변경신청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1) 실종 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 (「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2) 국적 상실 : ▲ 외국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 국적 선택 불이행

○ 영아수당(보육료)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영아수당(현금) 지원, 기존 영아수당 보육료 미지급
 - * 본인 요청시 영아수당(보육료)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지급 가능
 - *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 선택 가능함을 안내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영아수당(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영아수당(현금) → 영아수당(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영아수당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영아수당(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영아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 시까지 영아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 (대상) 영아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영아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 변경구분 | 지 원 내 용 | |
|----------------------------|--|---|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영아수당(현금) ↓ 영아수당(보육료) | - 해당월 영아수당(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 영아수당(현금) 자격종지일을 영아수당(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해당 월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자격 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 자격종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영아수당(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
| 영아수당(보육료) ↓ 영아수당(현금)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종지일을 영아수당(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해당 월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현금) 자격종지일을 영아수당(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중요)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 ① (개요) 영아수당(바우처) 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결정 지연으로 영아수당(바우처)와 영아수당(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영아수당(현금)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 ② 유형1 : 영아수당(보육료) 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급여 소급지원
 - 소급지원 대상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중지 및 종료(어린이집 퇴소 등) 또는 국비보조금(ex. 어린이집을 퇴소하여 퇴소이후 보육료 미결제자) 미지원 대상자 중 소급지원을 신청하는 자
 - 대상확인 : 어린이집 퇴소일 및 보조금 미지원 현황 전산상 확인
 - *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신청서(서식 20호)가 제출되면 어린이집 퇴소일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확인란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에 반드시 협조할 것(중복지원 방지)
 - 필수 구비서류 : 영아수당 소급지원 신청서(서식20호), 보조금 미지원 현황
 - * 종일제아이돌봄의 경우 전산상 자격상실 처리 확인 후 소급지원
 - 자격책정일 : 영아수당(현금)신청일 이전 어린이집 퇴소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

| 구분 | 소급신청시 자격상태 | 보육료자격중지일 | 영아수당(현금)책정일 |
|----|----------------------|-------------|---------------------|
| 1 | 보육료 자격중지 | 어린이집 퇴소월 말일 | 어린이집 퇴소월 다음 달 1일 |
| 2 | 보육료 자격유지+ 어린이집 퇴소 | 어린이집 퇴소월 말일 | 어린이집 퇴소월 다음 달 1일 |

- 소급지원 기간 : 어린이집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지원

〈(예)영아수당(보육료)자격으로 5.5일 퇴소 → 8.7일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한 경우〉

| 구분 | 영아수당 소급지원 여부 |
|-------------------------|--------------------------|
| 퇴소일자가 속한 달 (5월) | 소급지원 대상 아님(보육료 이용) |
| 영아수당(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달(6월) | 소급지원 대상 |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직전 월(7월) | 소급지원 대상 |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당월(8월) | 소급지원 대상 아님(신청에 따른 현금 지급) |

- ③ 유형2.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일 확인 후 급여소급지원
- 소급지원 대상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이전 월에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자
 - 대상확인 : 영아수당(현금) 변경 신청일 이전 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 전산상 확인
 - 소급지원 기간 :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전월까지 소급지원



예시 영아수당(바우처)↔영아수당(현금)

- (1)'22.1.1.출생 '22.2.3. 영아수당(현금)신청 → (2)'22.6.15.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신청 → '22.7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 (3) '22.8.16.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 및 영아수당(현금)신청 → (4)'22.10.15, 영아수당(보육료)신청 → '22.11월 어린이집 퇴소 → (5)'23.3.6. 영아수당(현금)신청
- ⇒ (1) '22.2.3 영아수당(현금)신청 : '22.1월부터 영아수당(현금)지원
- (2) '22.6.15.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신청 : '22.7월부터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지원
- (3) '22.8.16. 영아수당(현금)신청 : '22.9월부터 영아수당(현금)지원
- (4) '22.10.15, 영아수당(보육료)신청 : '22.10월부터 영아수당(보육료)지원
- (5) '23.3.6. 영아수당(현금)신청 : '22.12월부터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 ※ (3) 종일제아이돌봄은 자격종료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으로의 자격변경 신청 전월까지 미지급분을 소급지원하되,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소급지원은 하지 않음

Ⅲ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 ①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 ③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 (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 ④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 “제 1편- Ⅲ. 아동의 보호자” 참고)
 - i)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 ii)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 iii)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 iv)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함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 (참고)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영아수당(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영아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예시 60일 기간산정 특례 사례

- '18.10.1일 출생, '18.10.10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19.1.10일 확정 판결, '19.1.15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19.2.20일 영아수당(현금) 신청한 경우
⇒ 소송절차가 진행된 '18.10.10~'19.1.10일을 제외하면 출생 후 50일 이내 (9일 ('18.10.1~ '18.10.9) + 41일('19.1.11~'19.2.20)) 영아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산정되므로, '18.10월분 영아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

IV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5호)
-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여권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신분 확인방법

- '20.12.21일부터는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됨
 - *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제외하는 여권법 개정 및 시행
- 이에,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하나로민원) 여권정보 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확인
 - ②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주민번호 및 여권발급정보 확인 가능
 - *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발급정보가 수록된 증명서
 - ** 여권정보증명서는 '20.12.21.일부터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 ①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요청
- ② 아동 및 보호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 자료 등 확인)
- ③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 여부 등을 유선 연락 등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관리

2. 추가제출서류 (필요 시)

-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국외(해외)출생아 국내여권 등록

- ① 일부 국외출생 아동은 대부분 재외공관 등에서 출생신고 후 고유한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친권자의 신청(동의)이 있으면 여권 발급
 - 이때, 여권 상 주민번호는 생년월일+3(4)000000으로 고유한 주민번호가 아님
- ② 해당 여권 사용자의 입·출국 사실 확인 불가하므로 여권정보 등록·관리 필요

-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①유전자검사결과와 ②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1. 신청상담

(1)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 ☞ “제 1편 - 1. 영아수당 제도 개요” 및 “제 2편 - 1. 신청권자” 참고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 ①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 ③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 (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 ④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 “제 1편- Ⅲ. 아동의 보호자” 참고)
 - i)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 ii)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 iii) 필요 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 iv)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2) 가구구성 안내 (☞ “제 3편 - II. 가구 구성” 참고)

- 아동을 중심으로 가구를 구성하되,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가구원 구성

(3) 영아수당(현금) 지급계좌 안내 (☞ “제 4편 - I. 영아수당(현금) 지급 방식” 참고)

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시 반드시 변경된 보호자가 아동명의통장 소유여부를 확인 후 지급(ex.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등)

②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등) 보호 아동은 아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아동명의 통장이 없을 때 시설계좌로 수급가능 하나 아동명의계좌 개설 시 시설장은 수급분 전액을 아동명의 계좌에 입금 필요)

③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 영아수당(현금)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④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의 상황이면, 대리 수령(제3자 명의 계좌 입금) 가능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가구 구성에 반영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시 신청인에게 관련서류 직접 제출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관련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영아수당 상담·신청을 위해 행정내부 발급 등 적극 협조

- 상담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3. 고지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영아수당(보육료)의 경우 14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보육사업안내 참고)
- 통지 방법 : 서면 통지원칙이나 신청시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가능

(2) 신고 의무

- ▲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보호자 변경 사유 발생, ▲ 지급계좌 변경, ▲ 외국 국적 취득, ▲ 가구원 구성 변동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
 -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다음의 경우,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
 - 아동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영아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함을 안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제 6편 - II. 급여액 환수, III. 부당수급자 관리” 참고

- 지급된 영아수당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법 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영아수당은 이자를 붙여 환수
 -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영아수당 급여액 전부
 -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2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또는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영아수당 신청이 각하(법 제7조)되거나, 결정이 취소(법 제9조)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6조)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 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법 제7조)
 -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 지급결정 후 중지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 지원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V-1 전산관리번호 · 복수국적자 · 거주불명자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개요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제한된 자격 관리에 따른 급여 이종 지급 등 방지 필요
 - * 전산 관리번호는 출생년도만 관리하므로 자격 유지·상실의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조사 방안 : 기존 대상자(주민등록 미부여자) 중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확인
 - 급여 중지 및 신규 생성
 - 읍면동 담당자 :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수급자에 대한 행복e음 통합 조사표 입력 및 관리 철저
 - 시군구 담당자 : 연간 확인 조사 시,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대상자 일괄 자격 정비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아동의 실제 양육여부가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사업의 기준에 따라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의료급여 사업안내(p.82) - 전산관리번호 구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구분 | 설명 | 상세 |
|-----|--------------|--|
|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 2021년생 : 21 |
| ③ | 자료구분 | 3 : 행려환자 4 : 사회복지시설수용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불명자) 5 : 사회복지시설수용자(주민등록불명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자) |
| ④~⑥ | 보장기관기호 |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
| ⑦ | 성별 | 남 : 1, 3 / 여 : 2, 4 |
| ⑧~⑨ |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 ③ 자료구분별 년도 3 : 발생년도 마지막 2자리 4 : 관리번호 부여년도 마지막 2자리 5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 ⑩~⑬ | 일련번호 |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별 일련번호: 1~9999 |

확인 사항

- 시군구 담당자
 - 아동 확인지(베이비박스 관할 지자체 등) 문의를 통한 전산 관리번호 부여 및 영아수당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 작성 및 읍면동 시달
- 읍면동 담당자
 -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유선 또는 현장 확인 조사



조치 사항

- 신청 시 처리 절차
 - 시군구 담당자에 의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 이중수혜 유무 확인
 - 상담 내역에 전산 관리번호 관련 상담 내역 기록
 - 전산 관리번호 생성 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접수 진행
 - ※ 시설 퇴소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안내
- 사후 관리
 - 시설 퇴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기존 전산번호 자격 상실 처리 및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자격 생성
 -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비밀 유지 필요 시, 전산 관리번호 유지 가능

2. 복수국적자

- 개요 : 국외여권을 통한 출입국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 * 국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 불가
- 조사 방안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정비(단, 수급아동이 국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 복수국적자 정비 :

| 확인 사항 | 조치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복수국적자 유무 체크 확인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변동 알림 시 자격 적정성 여부 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국적자에 대하여 국외 여권 사본을 징구 (국외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 발생 등 안내) • 확인 결과, 미신고 상태로 국외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상 보장 정보에서 보장별 서비스 상태를 급여 정지로 변경 처리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규정에 의해 환수처리 등 |

- 복수국적 아동은 국외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3. 거주불명자

- 개요 :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재발급, 인감증명 발급 등은 제한되나, 영아수당 등 각종 복지 서비스는 지급 가능
- 조사 방안 ① 거주불명자가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주소지 또는 자주 머무르는 장소(찜질방, 공원 등)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② 거주불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 및 주변인들에게 평상 시 거주 여부 등 확인 ③ 확인 결과 신고 사실과 다른 경우 급여 정지 처리

| 확인 사항 | 조치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자 대상자 명부 관리 및 읍면동에 통지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거주지 현장 확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자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친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상담내역 기재 등) - 매월 급여 지급을 위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불가 시, 급여 미지급 됨을 강조 • 확인 결과, 신고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보장 정보에서 보장별 서비스 상태를 급여 정지로 변경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정지 후 실제 거주지가 재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 지급 |

VI 현장조사(필요 시)

① 현장조사 대상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세대를 달리하는 영아수당 신청인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

-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보호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실시 (실제 자녀 양육여부 확인)

② 현장조사 수행자

- 읍·면·동 영아수당 담당자가 현장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내부 협의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자 및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가능

③ 현장조사 절차

- 영아수당 신청 → 현장조사 실시·확인 → 영아수당 접수*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아동의 수급권 보호 및 60일 처리기한 준수 위해 선 접수처리, 후 현장조사 가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영아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등을 심의할 수 있음 (선 보장, 후 심의 가능)

VII 영아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1.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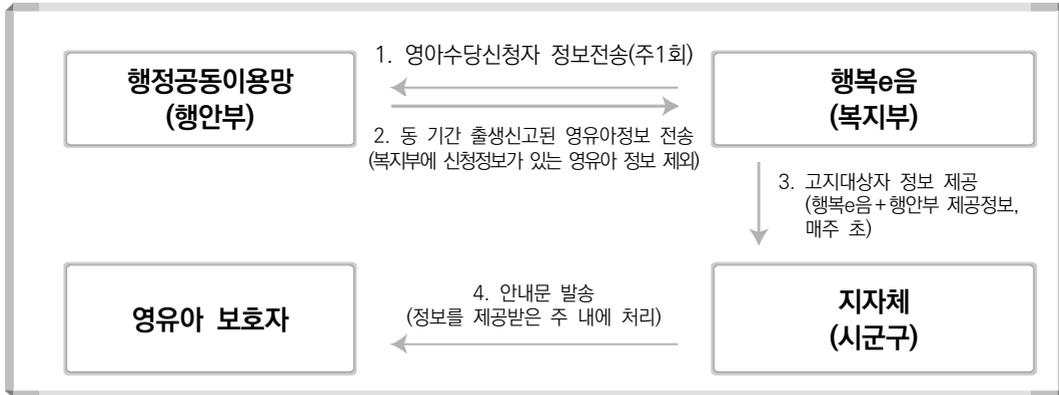
- (정의) 영아수당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목적) 영아수당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 방지
- (근거) 아동수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 (주요 내용) 출생자 및 영아수당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의무사항)

2. 세부 내용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영아수당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영아수당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 서면고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e-그린 우편' 또는 '수기 발송' 가능
- (고지주체)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단, 수기 처리 등으로 인해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지양식)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 활용
* 기존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에 영아수당 신청정보 추가 되었음

3. 처리 절차

-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는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고지 대상자 명단(출생자에 대해서는 주단위로 매주 초 제공, 영아수당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초 제공)을 확인한 후 해당 주 내에 안내문을 활용하여 우편으로 고지



4. 사후 관리

▣ 세부처리절차 및 방법 ▣



- ①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 된 자
 - * 예)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 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 ②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 ③ (유선 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영아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 ④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 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 ⑤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 발생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

5. 주의사항

- 영아수당 신청 관련 정보 고지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우편)으로 고지해야 함
 - 규정된 기한의 준수여부는 우편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
- 출생신고와 동시에 영아수당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서면(우편) 고지 필요
 - 법령상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아수당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서면 고지 필요

VIII 신청 등록 및 접수

1. 신청 등록

- 가구 구성 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 이때 신청일은 필수 서류가 제출된 날로 입력
 -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필수 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스캔 등)하면서 신청일 입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구원 구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청 등록 처리
-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처리

2. 접수 처리

(1) 신규신청

- 신청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처리
 -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임
- 행복e음에 접수 처리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2) 변경신청 ☞ 제2편 영아수당 신청 - II. 신청의 종류 - 2. 변경신청 참고

영아수당 신청접수 전 체크리스트

| 구분 | 점검항목 | 조치사항 |
|----------------|----------------------------------|--|
| 보호자 확인 |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 •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입력 |
| | | •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지침에 따라 확인하였는지 점검 |
| 가구 구성 | •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
| | • 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가구구성에 포함된 경우 |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외)조부모는 가구구성에서 제외 |
| | •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 |
| | •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하여 아동의 형제 자매 여부를 확인 |
| 아동 과의 관계 | •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 •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 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 | •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 • 아동수당 보장가구의 가구주는 수급아동이고 보장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를 입력 |

조사 및 보장결정

- Ⅰ 조사 개요
- Ⅱ 가구구성
-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제 3 편 | 조사 및 보장결정

I 조사개요

1. 일반원칙

(1) 개요

- 보장기관은 영아수당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
 -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

(2) 조사 원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 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2. 조사의 종류

(1) 신청 조사 (시행령 제6조)

- 조사 목적 : 영아수당 신청에 따른 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을 통한 연장보육 등의 경우 보육사업 안내를 참고

- 조사 대상 : 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조사 내용 : 아동의 수급자격,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
- 조사 시기 : 영아수당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조사 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결과 처리 :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자와 대상자에게 통지

주의 보호자 확인을 위한 조사

- 영아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그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 확인이 중요
-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보호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의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질문 할 수 있음
- 읍면동 담당자는 영아수당 신청 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를 확인한 후 가구 구성
- 단, 보호자 불분명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거부 등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영아수당 신청에 따른 조사절차 〉

| 단 계 | 업무 내용 | 처리 부서 |
|-------|---|-----------|
| 상담·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및 가구 구성, 신고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등 구비 서류 확인, 보호자 및 가구 구성 확정 - 90일 이상 해외체류,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확인 * 필요시 보호자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 실시 • 행복e음 신청 및 접수 처리 | 읍면동 담당 |
| 보장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인적정보 조회 (출입국 등) 및 확인 • 보호자가 친인척 등인 경우, 현장조사 결과 확인 • 보장결정 처리 | 시군구 사업 담당 |

(2) 확인 조사

- 가. 조사 목적 : 영아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급권 유지 여부 등을 확인
 - *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보육사업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을 참고
- 나. 조사 내용 : 아동의 수급자격 및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 조사
- 다. 조사의 구분
 - 정기 조사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적정보 일괄 갱신
 - 수시 조사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적사항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아동의 보호자 등이 인적 사항, 보호자 변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영아수당 확인 조사의 범위 〉

| 구 분 | | 조사 내용 | 세부 내용 |
|------------|-----------|-------------------------------------|---|
| 인적사항 변동 | 인적 변동 | 보호자· 가구원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 • 부모 재혼·이혼, 부모 등의 출산, 가구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등 • 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해외 장기 체류 등 |
| | 관리 행정동 | 주소지 변경 | • 전출·입 |
| 급여 관리 | 급여 지급 | 계좌 | • 계좌 변경 |

라. 조사 결과 처리

- 수급자격 유지 또는 중지, 급여액 변경, 보호자 변경 등 조치 및 통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마. 확인 조사 계획

- 보건복지부 : 영아수당 수급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인적사항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모든 지자체에 적용될 공적자료 중심의 공통 조사계획을 수립
- 지자체 : 보건복지부 확인 조사 계획의 집행 및 지자체 자율조사*를 위한 시군구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 ▲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적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일괄 조사가 어려운 경우,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자율조사 필요

부서 간 역할 분담

- 시군구 사업팀 : 조사범위 할당 등 확인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결과 취합·정리
- 읍면동 :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실제 보호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3. 자료제출 요구

-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은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요청 최소화
 - ※ 영아수당 지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자료제출 요구 관련 참고사항

-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필요시, 국민 불편 및 시군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 * 제출 안내, 제출서류 접수·스캔하여 시스템 반영 등 협조
- 서류 제출 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서류제출 안내 및 활성화 필요
 - * 시군구 통합조사팀 영아수당 서류제출 공용 이메일 계정 운영 등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영아수당 급여 지급의 결정을 취소·정지·변경 가능 (법 제7조 제6항, 제9조 제3항)

〈 필요 시, 제출 서류 목록 〉

| 구분 | 서류 | 목적 |
|-----------|---|--|
| 보호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필요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 확인서, 재소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는 제출 제외 |
| 복수국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필요 |
| 국외출생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상태가 아님을 소명 |

II 가구구성

1. 개요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보육료) 자격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자 범위 구성
 -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및 상담자료 등을 통해 가구구성을 확인하고, 시스템으로 연계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정·보완
 -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부모, 친권자·후견인, 대리양육자, 가정위탁보호자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가구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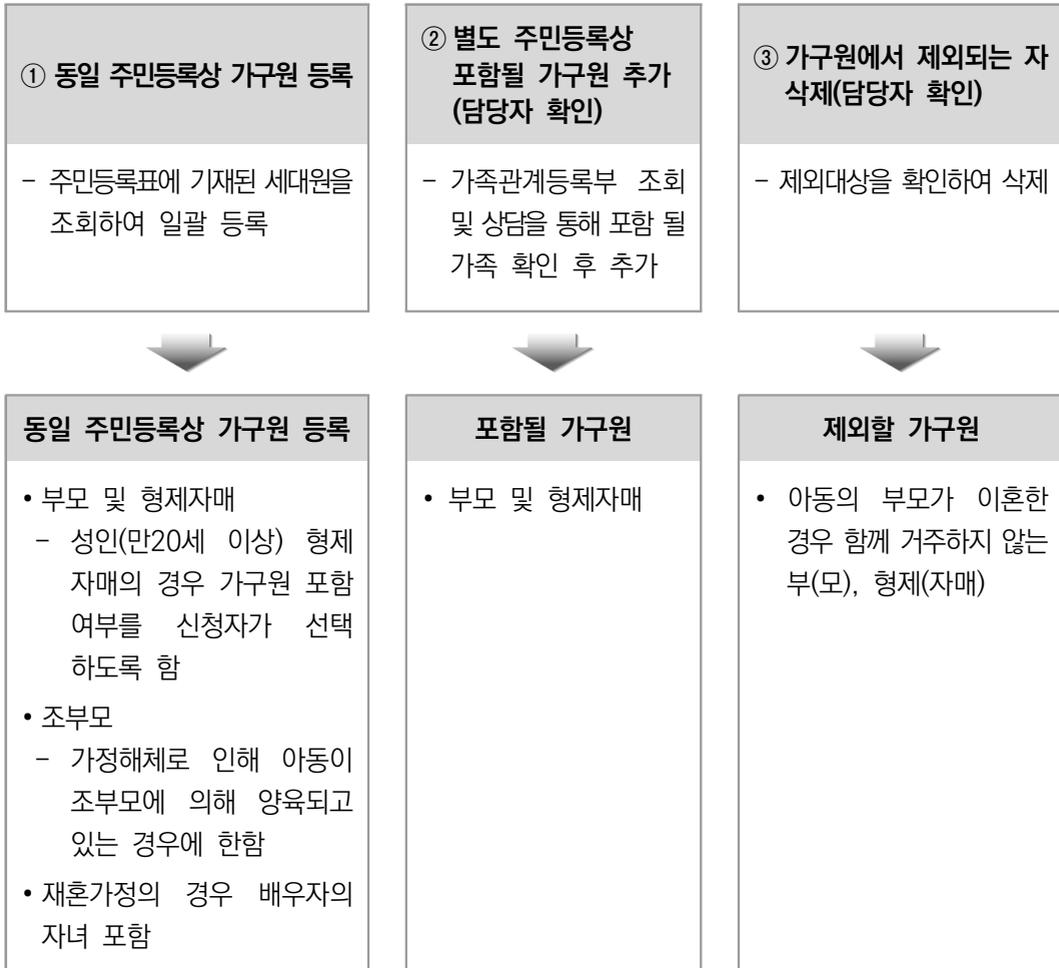
- 실제 영유아를 양육·보호하고 있는 부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가구원을 구성함(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 구성은 아님)

| 구분 | 가구원 범위 |
|-----------|--|
| ① 동일 주민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
| ② 별도 주민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 |
| ③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부 또는 모 |

3. 가구구성 절차

-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구성원 추가 (담당자 확인) : 부모 및 형제·자매
 - * 단, 부모 및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음
- ③ '②번'까지 진행 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담당자 확인)
 - 조부모와 함께 부 또는 모가 등록되었을 경우 조부모를 삭제*
 - * 단, 연장보육 자격 조사에 조부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조부모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삭제
- ④ 보장이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Ⅰ 가구구성 처리 절차 Ⅰ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1. 지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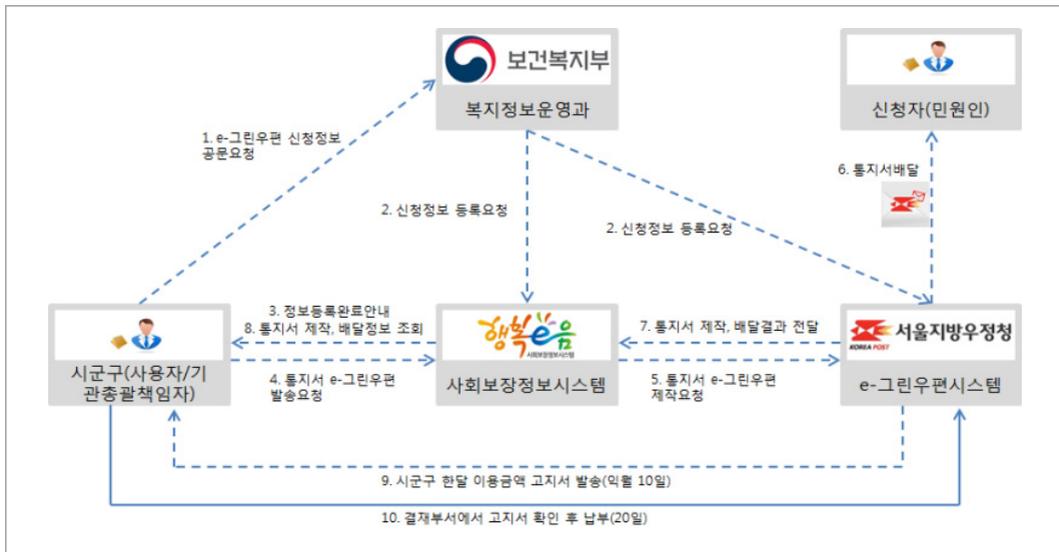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영아수당 지급여부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 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 영아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2. 결정 통지

(1) 통지 주체 및 방법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3호)로 신청인에게 통지*
- 서면 통지(우편)* 원칙이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e-그린우편서비스로 대량 발송 가능 (서비스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배달)



(2) 통지 내용

-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보장 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3) 통지 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영아수당(보육료)의 경우 14일 내에 통지)
 - 단, 보호자 판단변경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영아수당(보육료)의 경우 30일 이내)
 - * 신청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활실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 확인 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결정 후 즉시 통지

(4) 유의 사항

- 영아수당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
 - 단, 부득이하게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유선 연락 등)*를 받은 후 제공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담 내역에 동의 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 내용 등을 기록
- 담당자는 영아수당 신청, 조사, 수급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영아수당 지급

- Ⅰ 영아수당(현금) 지급방식
- Ⅱ 미지급 영아수당
- Ⅲ 수급권 보호

제 4 편 | 영아수당 지급

I 영아수당(현금) 지급방식

1. 지급개요

(1) 지급방식

- 영아수당(현금) : 매월 30만원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채정하고,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영아수당(바우처) 영아수당(현금)간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영아수당(바우처)지원
 -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라형 가정은 영아수당(현금)수령 가능

(2)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자격 변경신청의 경우 본문 “제2편 영아수당 신청 - II.신청의 종류” 참고하여 수당지급
 - * 예시 : 9.29일에 신청하여 12.20일에 지급 결정된 경우, 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9월부터 총 5개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p.10 참조)를 갖추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예시** 60일 기간산정 특례 사례

- '22.1.1일 출생, '22.1.10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22.3.10일 확정 판결, '22.5.15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22.4.15일 영아수당 신청한 경우
- ⇒ '22. 1. 10.~3. 1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22.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 영아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2. 영아수당(현금) 지급계좌

(1) 기본 원칙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2)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 대리 수령

가. 개요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영아수당 입금 가능

나. 인정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보호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
 - 보호자의 중증질환, 의식불명 등 거동 불가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 등으로 통장 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②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기타 유사 위원회로 대체 가능) 심의를 거쳐야함



예시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사유 확인 방법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시군구·읍면동 민원 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 사실 통지서 (금융기관 통지)
 - 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③ 거동불가 사유 발생
 - 보건소·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 장기요양 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④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발생
 - 치매의 경우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병원 진단서 제출 요청
 -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 제출 요청

다. 대리수령 가능한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영아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라.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9호)
 - * 대리수령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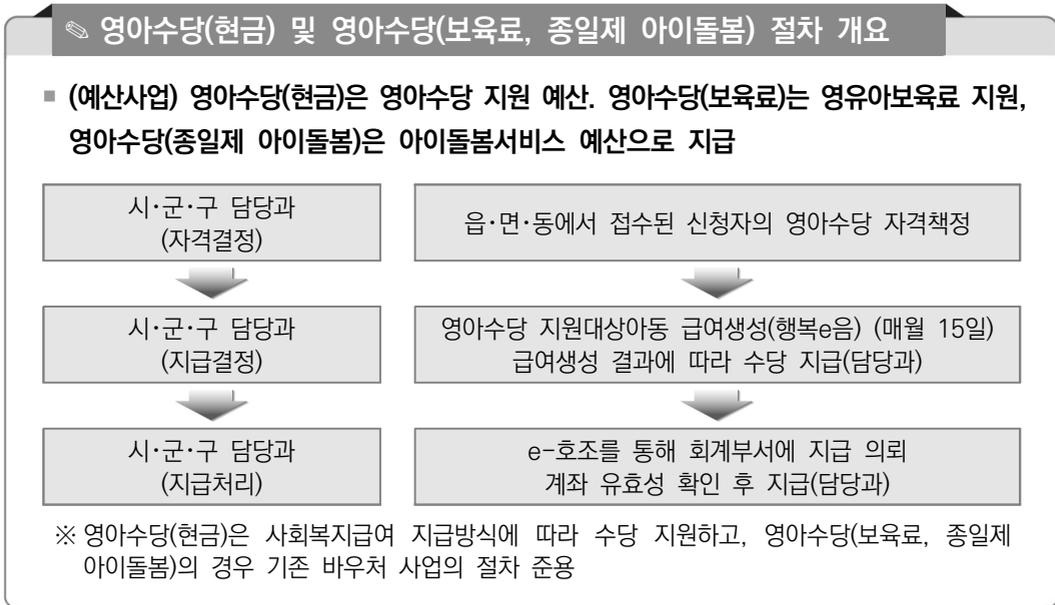
(3)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 “제 4편 - III. 수급권 보호” 참고)

-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 ※ 영아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영아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지급가능시기) 압류방지 전용 급여계좌코드 생성완료 후 별도 공문통지
 - (시스템지연안내) 압류방지통장 수급을 희망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압류방지지급 가능 기간을 별도로 공문 전달예정
 - 압류방지통장 급여지급 가능 통지시 대상자에게 압류방지통장계설안내 및 급여계좌 등록 후 미지급분 소급지원 처리

(4) 현장 지급 (시행령 제9조 제5항)

-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3. 영아수당(현금)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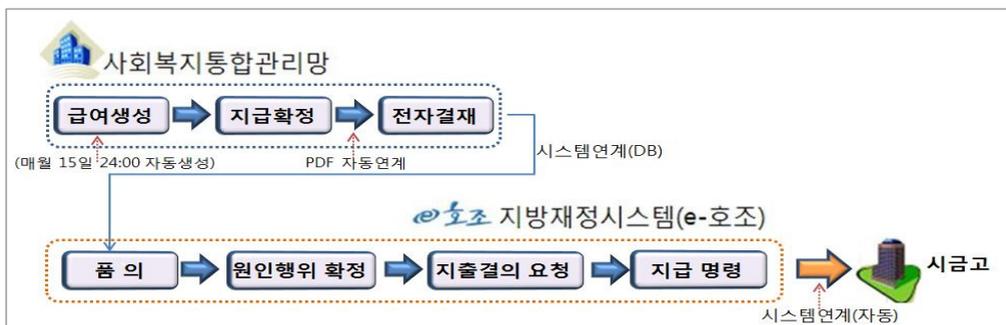


(1) 개요



* 급여자료 생성은 당월 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 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후에는 수정·삭제 불가 (단, 지급 제외 처리는 가능)

(2) 단계별 처리 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나. 급여 자료 생성

- 매월 25일 지급되는 정기 지급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생성
- 정기 지급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그 전일로 조정
- 정기 지급분 생성일 이후 계좌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경우, 사업 담당자가 추가 생성 가능
- 정기 지급분 생성일 이후 보장 결정자는 정기 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 생성하여 추가지급 가능

다. 지급 확정

- 사업 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된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라. 지급 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 파일)를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마. 급여 이체 및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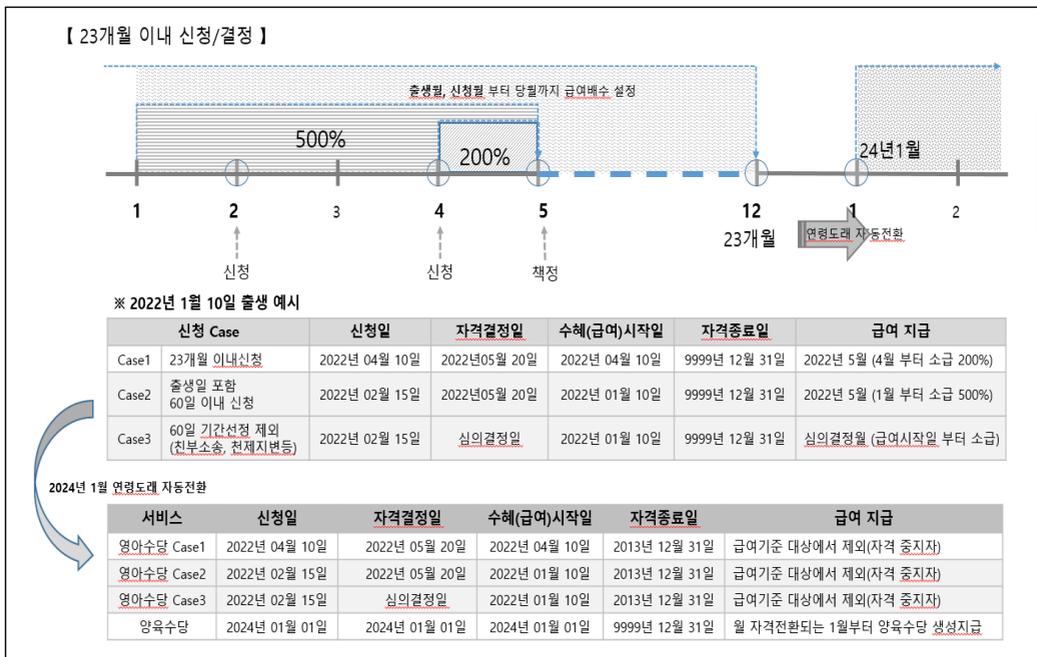
- e-호조를 통해 의뢰된 급여 내역은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영아수당(현금)”이 표기되도록 처리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바. 추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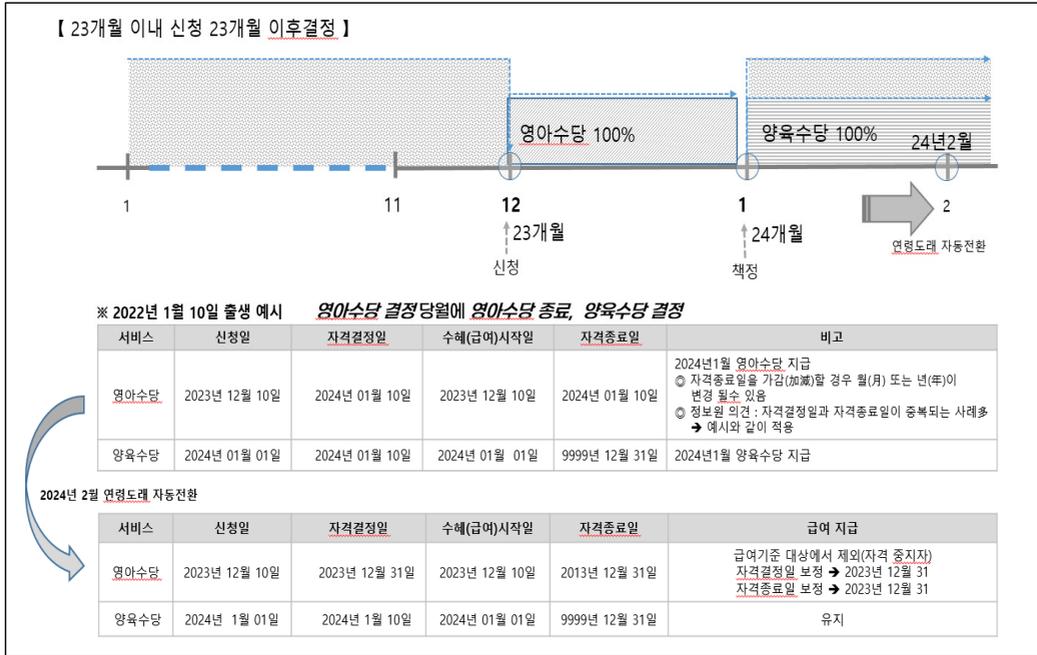
-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 결정자는 정기 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 생성하여 지급 가능

4. 연령도래자 자격전환

- (기본원칙)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24개월이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전환
-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 자격책정자 : 만24개월이 되는 달 월초 자격 일괄전환 (자동전환)
 - (영아수당) 연령도래월까지 지급(23개월) / 자격신청일로부터 소급지원
 - (가정양육수당) 만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은 24개월 이전이나 24개월 이후 자격 결정대상자 : 영아수당 결정 당월에 영아수당 자격 자동종료, 양육수당 자동결정
 - (영아수당) 24개월 이후 책정 시에도 자격결정 및 종료일 연령 도래월로 자동전환 및 중지 / 신청일로부터 소급지원하여 일시지급
 - (가정양육수당) 만24개월이 되는 월로 자동 자격책정



- 자격 결정일이 연령도래 준비기간을 지난 경우 급여미생성 되며 다음 달에 자격일괄 정비 후 급여 생성
- * 자격정비 필요사유 발생 시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정보의 보정 요청

II 미지급 영아수당(현금)

1. 개요

- 영아수당(현금) 지급의 경우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영아수당(현금) 지급
 - 단,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미지급 영아수당(현금)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 ※ 수급아동과 보호자 동반 사망 등으로 영아수당(현금) 지급 대상이 없게 된 경우 「민법」 상 상속절차에 의해 지급

2. 청구권자

-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을 각각 청구 (이 경우, 보호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간주)
 - * 단, 청구권자들이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미지급 영아수당(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 가능

3. 청구절차

- 미지급 영아수당(현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 청구
 - 청구 시 구비서류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서식 10호)
 -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 신고로 같음 가능)
 -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지급 영아수당(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필요 시)
- ※ 가족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미지급 영아수당(현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전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 요청

4. 지급청구 방식

-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료보정요청 및 구비서류 등록
 - 아동수당 지급과 달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미지급아동수당 신청기능으로는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자료보정요청 (공문발송)

5. 결정 통지 및 지급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서식 10호))
 - 지급 대상자 인적사항,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아동의 관계, 지급결정 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등 안내
 - ※ 서면 통지가 원칙이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도 가능
- 미지급 영아수당의 지급 결정일이 포함된 달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III 수급권 보호

1. 원칙

- 영아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영아수당(현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 할 수 없음

2.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1) 개요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
 - *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 제공, 상계, 지급 정지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 방지
 -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이므로, 압류 명령서를 제시하며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2) 발급 절차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 발급 후,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신청
 - ※ 영아수당(현금)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므로, 영아수당(현금) 지급 계좌를 사전에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지정

(3) 급여계좌 등록

-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 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 지급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청인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계좌 입력 시 일반통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급여 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4) 유의 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아동

-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Ⅲ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Ⅴ 가정위탁아동

제 5 편 | 사회복지시설 입소아동

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 유형 | 지원 내용 | 관련 법 |
|-------------|--------------|--|--------------------|
|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양육시설 |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아동복지법」 제52조 |
|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 |
| | 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 |
|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등 | 입양기관(가정위탁) | 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위탁가정 미연결시 입양기관에서 일시보호 | 「입양특례법」 제20조 |
| 가족복지시설 등 |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 |
|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 |
|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생계·주거 지원 | |
| | 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
| | 가정위탁 보호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II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 영아수당(현금) 신청

- 사회복지시설*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 시설 입소 아동은 친권자·후견인 등이 있더라도 시설장이 보호자가 됨
 -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의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처리 시, 아동 단독 가구로 구성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필요 시 시설 수급자 증명서(또는 입소 확인서)
 - * 시설 종사자가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재직 증빙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도 추가적으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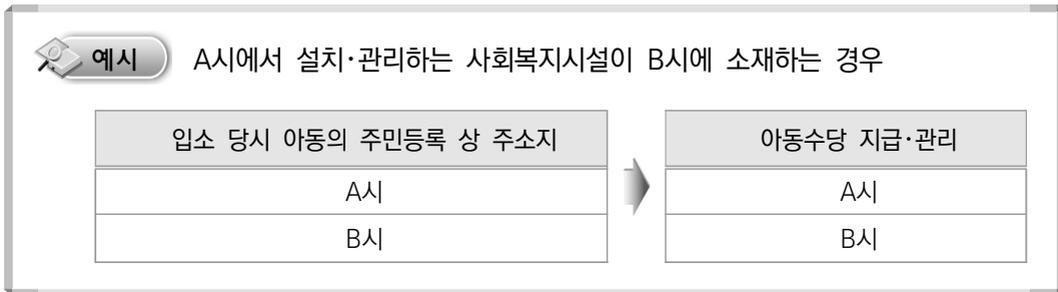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영아수당(현금) 관리

■ 그룹홈, 장애인복지시설 등 영아수당(현금) 수급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포함

- 원칙: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영아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함
- 회계관리 방식
 - 수입: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 불가
 - *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2. 영아수당(현금) 급여 관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
 -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수당 계속 입금
 - 예외 1 : 시설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담당



- 예외 2 : 서로 다른 지자체 간 시설 입소 협약(MOU) 등을 체결한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지급 가능
 - * 예시 : A시의 아동이 B시 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를 B시로 변경하더라도, A시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A시에서 아동수당 지급·관리

III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 영아수당(현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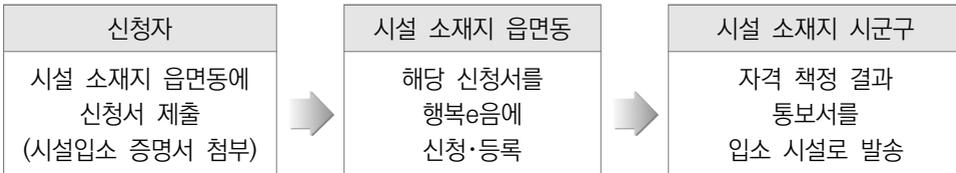
- 보호자(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보호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가능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처리 시,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를 한부모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가구 구성
 - ※ 예시 : 부의 폭력으로 모가 아동과 함께 일시지원복지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영아수당을 신청할 경우, 부를 제외하고 모자기구로 구성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시설입소 증명서

* 시설 종사자가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재직 증빙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보호·안전을 위해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가능하나,
 - 이를 통해 보장자격 부여 시 주민번호로도 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격 책정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既 지원 여부 확인



2. 영아수당(현금) 지급

-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명의 계좌에 입금 (아동 명의 계좌도 가능)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영아수당(현금)을 지급받던 아동이 퇴소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이중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시설장이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영아수당(현금) 담당자 모두에게 아동의 퇴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안내 (행복 e음 알림 서비스로 안내)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중요 입양대상 아동의 영아수당 신청·지급 관련 주의사항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완료되기까지 입양과 관련된 필요조치를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됨
 - 이에 따라 입양기관 등록지에 아동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정 주소지로는 주소지를 옮길 수 없음
 - ⇒ 입양기관 내 보호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동일하게 처리
 - ⇒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보호자(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므로, 영아수당 신청·지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

1. 영아수당(현금) 신청 및 지급

- ① 읍면동에서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이 실제로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보호 중인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급여 생성 전에 시군구를 통해 위탁현황 변동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당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 * 예시 : 위탁부모 A가 '19년 4월25일에 영아수당(현금)을 신청한 후 5월15일에 위탁부모가 B로 변경된 경우, '19.5월 급여 생성(15일) 전에 반드시 읍면동·시군구에서는 위탁현황 변동을 확인하여 영아수당(현금)을 바뀐 위탁부모 'B'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조치
- ② 행복e음 입력 시 아동 주소지는 입양기관 등록지로 입력되나, 관리 행정동을 위탁가정 주소지 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신청 등록 처리
- ③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2. 영아수당(현금) 업무처리 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 입양대상아동 영아수당 지급기관은(입양아동 소재지 시군구) 입양대상 변경사항 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할 것
 - * (매월·매주) 00년 00월 00주 입양대상아동(000복지회) 영아수당(현금) 지급 요청
- ① 입양기관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 공문발송(입양기관→입양기관 본부 소재 시군구)
 - 입양기관의 장은 본부 소재지 시군구(입양 및 영아수당 담당부서 반드시 포함)에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발생이나 위탁가정 변경 사항을 보고
- ② (입양기관 본부소재 시군구)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 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 공문발송(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 * 입양담당자가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니 입양아동 담당자는 반드시 해당 급여담당자에게 공문 전달
 - “입양대상 아동 발생보고 현황” 및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 소재지 변경 사항(전·출입 등)”을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기관 지부 소재지 시군구, ▲입양기관 본부 및 지부에 각각 통보
- ③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영아수당(현금) 담당자)

중요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영아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영아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 예시 : 입양대상 아동이 A시에서 B시로 위탁가정이 변경된 경우,
 - ⇒ A시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수당이 계속 지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 B시는 새로운 위탁부모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3호) 제출 요청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신청서」(서식 13호)를 제출 요청하고 변경신청에 따라 가구원과 관리 행정동 등을 변경하여 수당 계속 지급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 ※ 담당자 확인 시점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위탁부모 변경 등이 있었으나 이미 급여가 생성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 ① 입양기관에서 본부 소재지 시군구(입양 담당 부서)에 입양대상 아동 보호 종료 보고
- ② 해당 시군구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기관 지부 소재지 시군구, ▲입양기관 본부 및 지부에 각각 통보
- ③ 통보받은 시군구는 해당 사항을 읍면동에 통보
 - ※ 해외입양 아동은 입양일 다음 달로 자격 중지
-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제출 요청 및 영아수당·양육수당 지급 관리
 - * 예비 양부모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에 해당 아동의 입양이 완료된 경우, 지급계좌 변동이 없더라도 보호자 자격이 예비양부모에서 부모로 변경된 것이므로 보호자 변경절차 진행 필요

V 가정위탁아동

- 신청대상 :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
 -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정위탁 자격책정 여부 확인
- 급여지급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
 - 아동명의 통장으로 지급시 위탁가정에서 아동명의 통장 소유여부 등 반드시 확인
 - 위탁보호 결정 이후에 기존 보호자가 아동명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보호결정 이후 지급분을 환수조치 후 위탁부모에게 재지급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아동의 전입절차 진행
- 급여관리
 - 가정위탁담당부서에서 보호변경·보호종료 등 자격 변경사항을 영아수당 담당자에게 안내(공문 등)하고 영아수당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변동처리

수급자관리

- Ⅰ 수급아동 사후관리
- Ⅱ 급여액 환수
- Ⅲ 부당수급자 관리

제 6 편 | 수급자관리

I 수급아동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개요

(1) 대상

- 수급아동의 수급 자격 및 영아수당 지급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수급 아동 거주지, 보호자, 가구 구성, 해외 출입국 등)

(2) 확인 방법

- 수급아동 보호자의 신고, 변동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이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 ※ 미혼부의 출생미등록 자녀(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전까지 분기별로 아동 양육여부 점검(현장조사) 실시 후 서식 7호(현장조사서)에 기록 및 변동사항(출생신고 완료, 전입 전출 등) 확인 조치
 - 또한, 법원확인 절차 완료,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시 미혼부가 관련 사실을 아동거주지(미혼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
- 가구원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은 행복e음 또는 공적자료로 확인 또는 별도로 받은 서류는 별도 보관

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제7조, 제8조)

- ...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1항)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7조 제2항)

2.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 신고 사항

- ①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② 영아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관련 사항
 - ▲사망, ▲실종 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③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동학대, ▲수용시설 입소, ▲보호조치, ▲일시보호조치, ▲시설 입소, ▲가정폭력, ▲기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 ④ 영아수당(현금)의 입금계좌 변경
- ⑤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 ⑥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2) 신고 및 처리방법

-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서식 12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6호) 등 및 관련 증빙 서류
-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 확인조사의 종류 ■

| | |
|------------------|---|
| 조사 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수시: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
| 조사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변동알림: 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변동 알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사 • 변동신고: 수급자의 자발적 변동신고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사 • 공적자료 미확인: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
|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 특정 대상: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
|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 서면: 수급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 등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 현장: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

(1) 영아수당 수급권 상실 (법 제14조)

가. 수급권 상실 사유

- 사망, 실종 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수급아동 연령 초과

나. 지급 관련 기준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영아수당 지급이 원칙
 - 사망, 실종 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영아수당 지급

- 단 아동이 만 2세가 되어 영아수당(현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하고 만 2세가 되는 달에는 가정양육 수당으로 자격전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다. 처리 절차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수급권 상실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상실 통지서」(서식 3호)를 보호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안내 포함)
 - * 연령초과가 아닌 사유로 수급권 상실 후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안내

주인등록번호 정정으로 수급아동 연령이 상(하)향 조정 된 경우 처리 방법

- 수급아동 연령이 만 2세(생후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 처리 → 해당 월까지는 수당 지급(생일이 도래하는 전월)
- 당초 수급아동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경우 (예 : 만 4세 → 만 2세)
 - 아동의 실종 등 단순 사유로 인한 출생 신고 오류인 경우, 잘못 지급된 영아수당액 환수 또는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 처리
 - 보호자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출생 신고 오류인 경우, 잘못 지급된 영아수당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2) 영아수당 지급 정지 (법 제13조)

가. 지급 정지 사유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아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
 -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나. 지급 정지 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양육수당과 달리 소멸한 달부터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i)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 (참고) 국외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귀국하여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거쳐 영아수당(현금)을 신청한 경우,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지급 가능

ii)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 경찰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예시 수급아동이 '18.10.15일 실종신고 접수되어, '19.2.10일 신고 해제된 경우
⇒ '18.10월과 11월은 지급, '18.12월부터 '19.2월까지 지급 정지

iii)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

-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아동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예시 수급아동이 '18.10.1일부터 '19.8.10일까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18.10월은 지급, '18.11월부터 '19.8월까지 지급 정지

다. 처리 절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 보호자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보호자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제출 요청 (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발급 후 확인)
 - ※ 행복e음 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국외 체류 의심자가 통보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 제출 처리
 -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지원센터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 조회 등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 행복e음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 없이 처리 가능

라. 유의 사항

- 행복e음으로 급여 지급정지 사유가 통보된 경우, 시스템 급여 생성 시 자동으로 지급 정지됨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즉시 통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행복e음 조사표에서 재책정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II 급여액 환수

1. 개요

- 환수 주체 : 시·군·구청장
- 환수 기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
 - 다만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

-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후 보육비용 환수 결정 처리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 환수 대상

-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급여가 지급된 경우
-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영아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간 중복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 대상자 결정

- 본인 신고 또는 확인 조사 등에 따라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수 결정 등 관련절차 진행
- 환수 결정 즉시 환수 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해야 함
-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영아수당을 환수 해야 함

(3) 환수금액 산정

가. 환수 범위

- 잘못 지급된 급여액 전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나. 이자의 가산

-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 허위 출생신고 후 영아수당 수령, 아동을 확대하고 사망하게 한 후 영아수당을 계속 수령한 경우 등
- 이자 가산 방법
 - 가산 기간 : 환수범위에 속하는 영아수당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적용 이자율 및 산정 방식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연 단위 복리 계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계산)

|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6% | 1.8% |

다. 끝수의 처리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버림)

라.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 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 영아수당(현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1) 징수 방법

-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2) 상계 처리

- 환수 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영아수당(현금)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 가정양육수당과의 상계처리는 불가함

(3) 환수금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 *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 영아수당(현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 징수금액 처리
 - 해당년도 급여분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여입, 과년도 급여분은 지자체(시군구) 세외 수입으로 처리

(4) 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 ① 영아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 시효 중단 사유 | 재기산일 | 비 고 |
|----------------------|-------------|---------------------------------|
| 최초 고지 및 (최초)독촉 고지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 승인(일부납부, 총당, 납부각서 등) | 승인일의 다음날 | |
|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 |

4. 결손 처분

(1) 결손 처분 가능 대상

가. 일반적인 결손 처분 대상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 ※ 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③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④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⑤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결손처분 전에 반드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⑥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나. 「아동수당법」 상 결손 처분 대상 (아동수당법 제16조 제4항)

- 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② 환수 대상자 행방불명으로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아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i)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 ※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이 물려받은 재산과 소득이 상당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됨 (후견인 등 보호자가 지정된 이후 환수 절차 진행)

- i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영아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됨



예시 위원회 심의를 통한 결손 처분 사례

-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15세인 미성년으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손 처분 가능
 * 단,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됨

(2) 결손 처분 방법

- ①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일반적인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 확인
 - 일반적인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라도 「아동수당법」에 따른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 확인
- ② 시군구청장은 체납된 환수금의 채권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
 - * 환수금 결손처분 심사 후 7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심사결과 입력·관리
- ③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징수법」이나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조치
 - * 단,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는 제외

Ⅲ 부당수급자 관리

1. 과태료부과

(1) 위반행위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보장결정을 위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 개별기준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 6 | 12 | 20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 6 | 12 | 20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2항 | 3 | 6 | 10 |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기준)
- ② ①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①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
- i)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i)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ii)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v)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음
- i) 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ii)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면제를 받은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단,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i)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i)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iii)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통지

- 시군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과태료 부과 이유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과태료 부과

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라. 과태료 징수 절차

-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명시

2. 벌칙(아동수당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누설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함
 -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이의신청 등

- Ⅰ 이의신청
- Ⅱ 위원회의 기능 및 종류

제 7 편 | 이의신청 등

I 이의신청

1. 개요

(1) 목적

- 급여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주체 및 대상

- 주체 : 급여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신청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
- 대상 : 급여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처분
*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3) 방법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급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구두로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

(4)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 6호)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회보장급여 결정·중지·상실 통지서 등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2. 절차

(1) 송부

- 읍면동으로 신청된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

(2) 접수·검토·결정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필요 시, 공무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현장 조사서」(서식 7호)를 작성하거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3) 통보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식 14호))
 -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 급여신청 관련 :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
- 급여신청 이외 : 처분한 달로 소급 적용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II 위원회의 기능 및 종류

1. 위원회 기능

(1) 위원회 종류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수당법」 제12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중 하나의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음

(2) 위원회 기능

- ① 영아수당(현금) 소급지급(출생 후 60일 이내)의 기간산정 제외 관련
 - 천재지변 등으로 영아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② 보호자가 아닌 자의 영아수당(현금) 대리수령 인정 관련
 - 보호자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중증질환·의식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의 대리수령 가능 여부 인정
- ③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사유 관련
 -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아동학대 우려,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④ 영아수당 환수 시, 결손처리 관련
 - 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이의신청의 심의 및 결정
- ⑥ 그밖에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유사 위원회 활용(「지방자치법」 제130조)

- 해당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영아수당(현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 Ⅰ 국가 및 지방비 부담비율
- Ⅱ 부담금 집행 및 정산

I 국가 및 지방비 부담비율

1. 국가 부담 비율

- 국고 보조율 = 기준 보조율 ± 차등보조율
 - 기준 보조율 : 서울 35%, 지방 65%
 - 차등보조율 : ①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지자체는 국고보조율 10%p 인상
 ②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인 지자체는 국고보조율 10%p 인하

| 지 표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 ① 산식 = $\frac{\text{자체 수입} + \text{자주 자원}}{\text{일반회계 총계 예산 규모}} \times 100\%$ |
| |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 |
| |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 |
| 사회복지비지수 | ① 산식 = $\frac{\text{자체 수입} + \text{자주 자원}}{\text{일반회계 총계 예산 규모}} \times 100\%$ |
| | ②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의 기능분류에 따른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를 말함 |
| |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비 분담 비율

- 시도 -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의 영유아보육사업을 준용

II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 집행 범위

-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현금) 및 미지급 수당 급여 지급

2. 주소지 변경 시, 영아수당(현금) 지급 지자체

- (매월 15일 이전 전입) 현 주소지(전입지) 시군구
- (매월 16일 이후 전입) 전 주소지(전출지) 시군구
 - * 예시 : 9월 15일 A시에서 B시로 전출하면 B시에서 지급. 9월 16일 A시에서 B시로 전출하면 A시에서 지급
 - ※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이미 급여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시군구에서 지급

3. 정산

- 시군구청장은 영아수당 지원 예산 집행 이후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여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1/4분기까지 반납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9 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처리기간 | | 별도안내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실거주지 주소 ¹⁾ : _____) |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전자우편 |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직업 | 직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배우자 관계 ²⁾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 | | | | | | | | |
| 부양의무자 ⁶⁾ | 수급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 가구원수 | 전화번호 | |
| | 의 | | | | | | | | |
| | 의 | | | | | | | | |
| | 의 | | | | | | | | |
| | 의 | | | | | | | | |
| 급여계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비고(사유) ⁷⁾ | | |
| | | | | | | | | | |
| 통지방법 | |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 | | | |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 2),3) 해당자에 한함
- 4),5)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7)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장구분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 []임차 ⁹⁾ []기타 ⁹⁾) []교육급여 | |
|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대상자 이름 : _____),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
| 노인 |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 |
| 장애인 | []장애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
|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인소 []차상위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¹⁰⁾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 | | | |
|--------------------|---|-------------------------|--------------|----------------|
|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 | |
| 감면 서비스 |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 |
| |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_____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가족 사항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인 (√ 체크) |
|--|--------------|
|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p> <p>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p> <p>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

| | |
|--|-----|
| <p>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 |
|--|-----|

| 선택적 동의 | 동 의 (√ 체크) |
|---|---------------|
|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 7.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유의 사항 | 확 인 (√ 체크) |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 | | |
|---|--|---|
| 처 리 기 한 |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영아수당(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 |
| 관 계 법 률 | 보장구분 | 해당 법률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 | 아동 ·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
| | 노인 | 기초연금법 |
| |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기타 |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
| 신청시 구비서류 | | 추가 제출서류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제출하는 곳 |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 |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 | | |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 | | | |
|---------|---|--|--|---|------------------------|--|--|
| 제출처 |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 |
| 읍면동주민센터 |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 | | | | |
| | [] 가시간병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신청요건(1개 선택) | | 서비스시간 |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 | | | |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지원대상자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영유아) | | | |
| | 발달장애 서비스 | 장애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 | | |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청능재활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음악재활 <input type="checkbox"/> 행동재활 <input type="checkbox"/> 놀이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input type="checkbox"/> 감각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운동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심리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 | | | |
|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진단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 | | | |
| | [] 발달 장애인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녀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발달장애 인 부모 상당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지원유형 |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 | | | |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
| |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
|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신청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 |
| | | 지원대상자 | | | | | |

| |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 |
|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노인장기요양원전자 지원 | | |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
| | | [] 직장생활 | [] 취약가구 | | |
| |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
|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
|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기타 | | | |
|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 년 | 월 | 일 |
| | 지원 유형 |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2명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 | | |
| | 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 | |
| | |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산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 |
|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기타 | | | | |
| 보건소 주민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교체분유지원 | 지원대상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
| | | 기본지원대상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 []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자 |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 |
| |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현금(시설보호 아동일 경우) [] 지역화폐(조례로 정하는 경우) | | | |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보호자(카드 보유자) [] BC(은행) [] 삼성 [] 롯데 [] KB국민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선택합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 | |
|--|-----|
| <p>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
|--|-----|

유의사항 확인 (√ 체크)

| | |
|---|-----|
|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1호(영아수당(현금))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급여·서비스내용 | | | | | |
| 비고 | | | | | | | | | | |

1. 귀하는 **영아수당(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영아수당(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영아수당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영아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영아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영아수당(현금) ↔ 영아수당(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은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영아수당(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영아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식 3-2호(영아수당(보육료))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휴대전화 | |
| | | | | | 전자우편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급여서비스내용 | | |
| 비고 | | | | |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현금)을 대신하여 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영아수당(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3-3호(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
 [1 면]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전자우편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급여·서비스내용 | | | | | |
| 비고 | | | | | | | |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현금)을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지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서비스유형 | 지원유형 | 보장기간/지원시간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신청 후 결정 시 가정양육수당 수급으로 자동전환되는 경우)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급여·서비스내용 | | | | | | |
| 비고 | | | | | | | | | | |

1. 귀하는 영아수당(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영아수당(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2.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영아수당(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영아수당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영아수당(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식 5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 | | |
|----------------------|--------------------|----------------------------|------|
| 수급자 (보호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 | 거주지(소재지) | | |
|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 공내용 | | | |
| 환수(반환) 사유 | | | |
| 환수결정액 | 원 | | |
| 기 납부액 | 원 | 납부장소 | |
| 납부액 | 원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내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국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1>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별도안내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처분내용 | |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 년 | 월 | 일 |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 년 | 월 | 일 |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 | |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호-공통서식[별지 제16호서식]

| 현장 조사서 | |
|--|--|
| 조사 대상 | |
| 조사 목적 | |
| 조사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조사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
| 조사의 범위 | |
| 관계 법령 | 아동수당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 제출자료 | |
| 기타 | |
|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60px;"> 직인 </div> </div>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 수급아동 보호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 | 아동수당 입금 희망 계좌: |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 |
| | 대리수령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간) | |
|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수급아동과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을 위한 아동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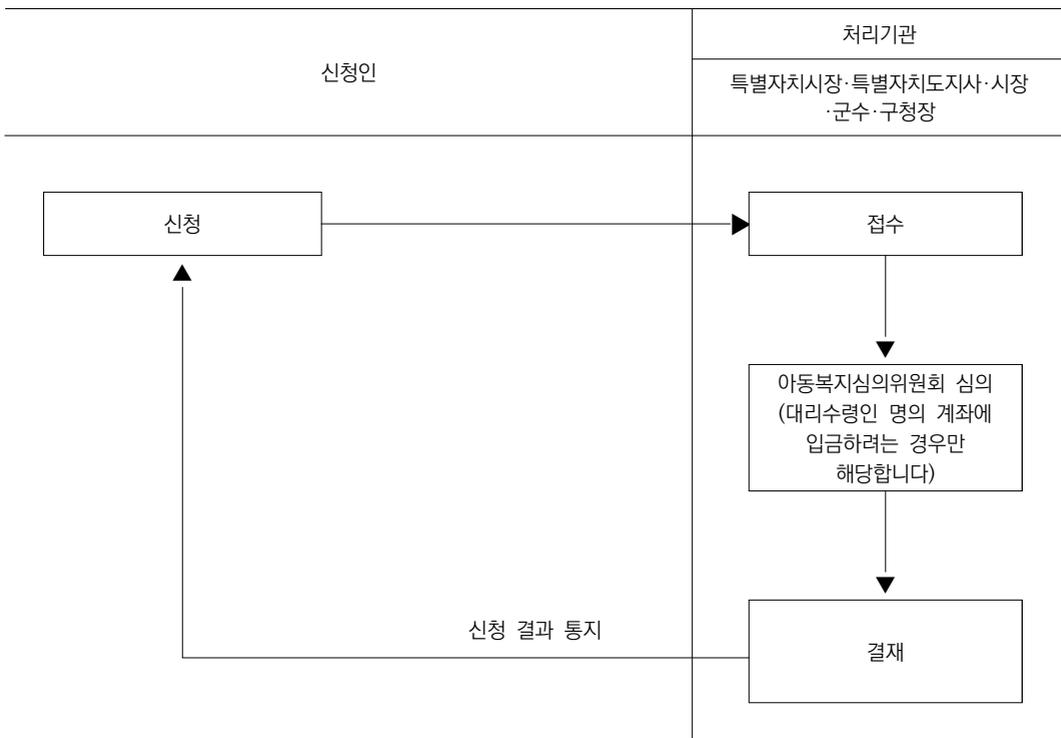
첨부서류

-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라.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아수당(현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청구권자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대리인 | 보호자가 여럿인 경우 | ()명 |
|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기타() | | |
| 미지급 영아수당 내역 | 사망자(수급아동) | 주민등록번호 | |
| | 사망일 | 청구액 | 미지급기간 ()개월 천원 []년 월 - []년 월 |
|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 | | 대표자 선정 | |
| | | 선정일 | 서명 또는 인 |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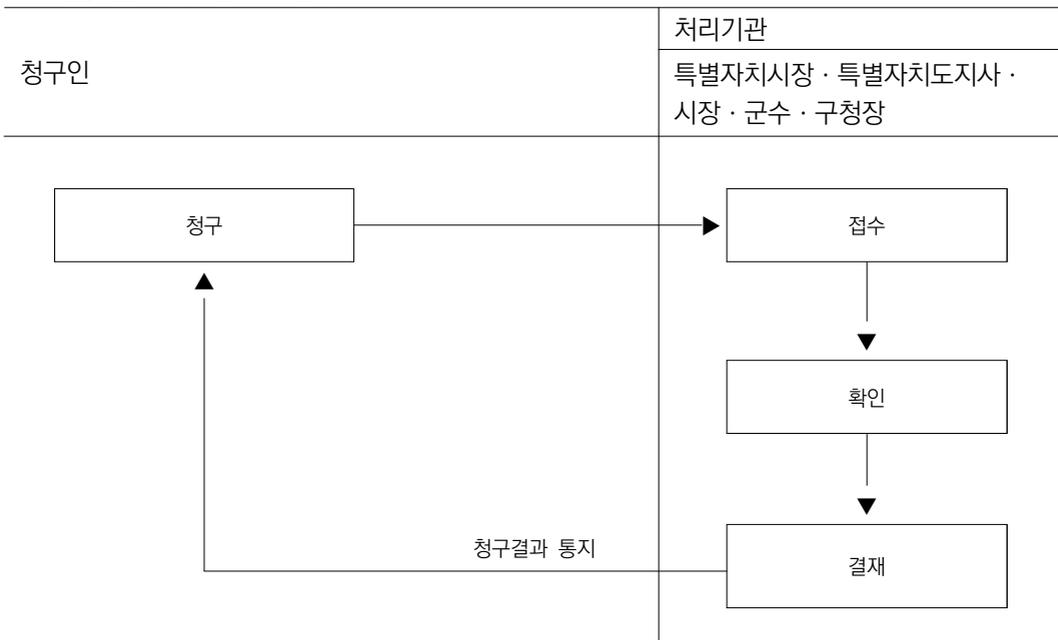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기재요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2.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업무담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2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수급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신고사유 | 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 | 신고 사유 발생일 |
| |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 |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_____ []문자 메시지 []기타() | | |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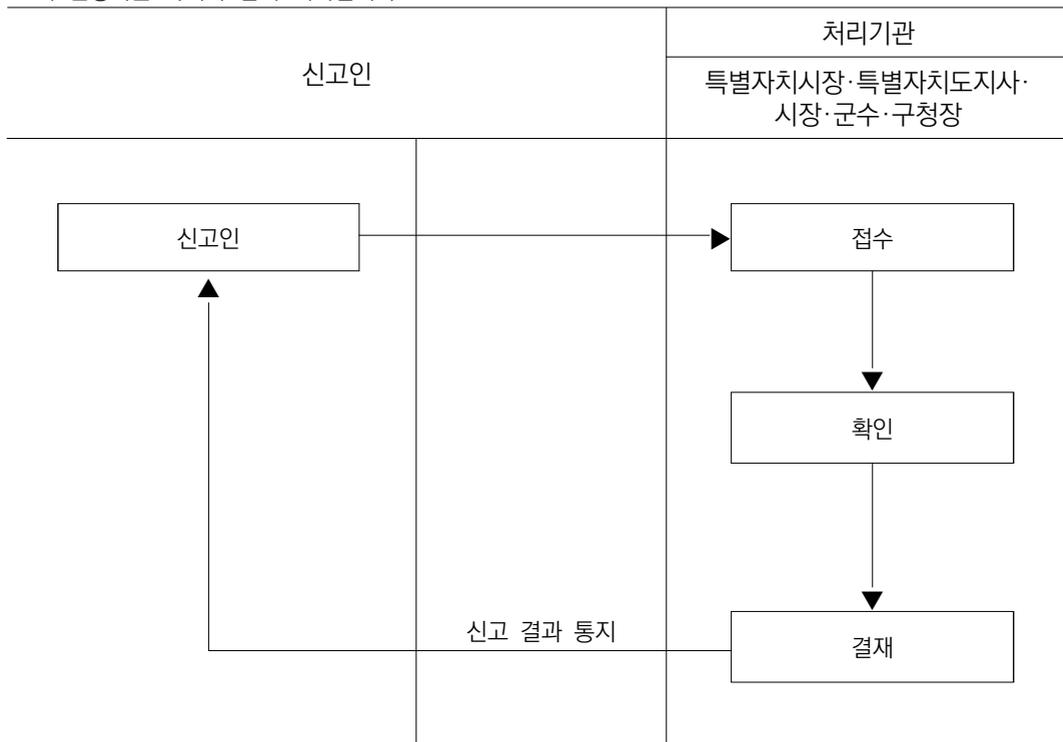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3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
| 수급아동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변경 전 보호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아동과의 관계 |
| | 주 소 | | |
|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아동과의 관계 |
| | 주 소 | | |
|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
|----------|--|
| 보호자 변경사유 | []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영아수당(현금)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 | |
|------|--------------------------------------|
| 통지방법 |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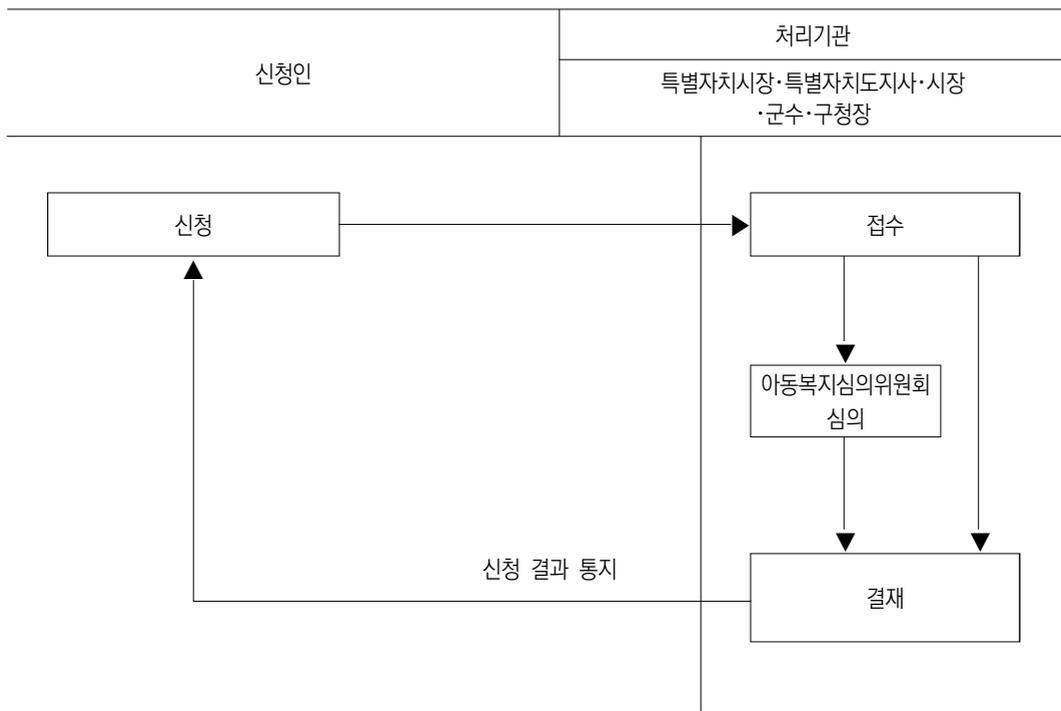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식 14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아동과의 관계 |
| | 주소 : | | |
| 이의 신청일 | | | |
| 처 분 내 용 | | | |
| 이의신청 내용 | |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input type="checkbox"/> 각하 | <input type="checkbox"/> 기각 | <input type="checkbox"/> 처분 취소·변경 |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별지 작성 가능〉 |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이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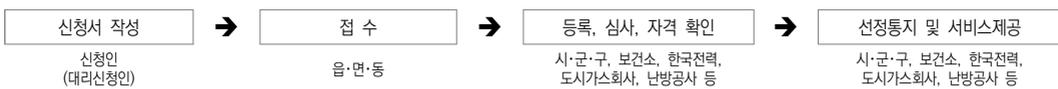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류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건강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서식 16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 즉 시 | |
| 신 청 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전화:) | | |
| | | 보호자와 관계 (대리인의 경우) | | | |
| 복 지 급 여 계 좌 변 경 | 현 행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 |
| | 변 경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7호

영아수당(현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수신 : ○○○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목 : 영아수당(현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

| | | | | | |
|-------------------|-----|-------------|------|------------|--|
|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행정상 관리주소 | 연락처 | 집 (사무실) | |
| | | 실제 거주지 | | H·P | |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

※ 실제 거주지 : 신청 접수시 상담내역에 의거 실제 거주지 읍·면·동 관내의 구체적인 거주지역을 적시하여 기재

위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호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읍·면·동)의 영아수당(현금) 수급자입니다.

향후 급여 지급 등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오니, 매월 15일까지 귀 읍·면·동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근거: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하신 후, 그 결과를 아래 FAX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공무원) : 직급 성명

연락처 :

FAX :

년 월 일

○○○ 읍·면·동 주민센터장 (인)

서식 20호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주소 | | | | | |
| 지원대상자 | 아동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퇴소어린이집 | | 소급지원 신청기간 | | | |

어린이집 확인란(어린이집 작성필요)

| | | | | |
|-----------------------------------|--|----------|--|-----------------|
| 퇴소일자 | | 보육료 결제여부 | | |
| 기 대상자의 어린이집 퇴소일을 보호자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어린이집 | | | | (직인) |

| 확인 및 동의사항 | 확인 (√ 표시합니다) |
|---|-----------------|
| 1. 귀하는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어린이집 퇴소 후 영아수당(현금) 자격신청 누락에 따른 영아수당(현금) 미지급분이 소급지원됨에 동의합니다. | [] |
| 2. 소급지원기간은 어린이집 퇴소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 신청일 전월입니다. 해당기간에 한해 영아수당(현금) 지원금이 소급됨을 확인합니다.(어린이집 퇴소 당월 미지급) | |
| 3.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 상의 어린이집 퇴소일이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 |

본인은 영아수당(현금) 소급지원신청에 따른 확인사항에 동의하였으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담당자 확인란 | | | |
|-----------|---|-------|-----------|
| 보육담당 확인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담당자성명 | |
| | | | (서명 또는 인) |